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 28.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1. 1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9. 1. 21.
- 다. 상정일자 :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9. 1. 2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보장과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가.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가 평가소득 기준에서 「최저보험료」 기준으로 개편 시행(2018.7.1.)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함

나. 주요내용

1) 지원대상 기준의 구체화(안 제3조)

- 당초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선정기준을 월1만원 이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

2) 근거법령 보강(안 제3조제3호)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검토보고 (최종의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8.7.1.자로 개정 시행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성별이나 나이 등으로 추정하여 소득을 계산하던 평가소득 기준에서 연 소득과 재산 수준 등을 적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기준으로 개편함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아울러, 근거법령 보강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였음.
- * 재산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 소득 비중을 높이는 단계적 개편(18.7월 1단계, '22.7월 2단계 개편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17.3.30)
- 동 부과체계 개편 내용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국민건강보험 **최저보험료가 13,550원**(2019년 기준, 2018.7월 기준으로 13,100원)으로 결정됨
 - * 부과체계 개편 이전에는 평가소득 등으로 1만원 이하의 소액보험료 세대도 있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정액의 최저보험료($13,550\text{원} + 1,150\text{원} = \text{국민 건강보험료} + \text{장기요양보험료}$)이상 납부

〈표 1〉 연도별 국민건강보험 최저보험료 변경내역

연도별	2017.1월	2018.1월	2018.7월	2019.1월
최저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820 (3,590+230)	3,930 (3,660+270)	14,060 (<u>13,100</u> +960)	14,700 (<u>13,550</u> +1,15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1만분의 851)

- 이에, 현행 조례에서 정한 저소득 주민의 지원대상 보험료가 월 10,000원 이하로 되어 있어 개편된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보다 낮은 수준임

- 따라서,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등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대상 범위를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13,550원) 이하인 세대로 조례를 개정하여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보험료가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 다만, 이번 회기에 본 조례안이 의결·공포되더라도 한시적 감면 규정에 따라 월 10,000원 이하 기준에 지원을 받던 대상자는 계속 지원을 받게 되고 2018년 기준 월평균 632세대에 284만원 지급 또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2.7.1.부터 시행을 대비하여 지원대상의 적정규모에 대하여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2> 2018년도 마포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실적

구 분	연누적지원	월평균지원	지원금액	월평균 지원액
2018년 기준	7,578세대	632세대	34,136천원	2,844천원

참고자료 1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주요 내용

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

서민의 부담은 줄이고 납부 능력이 있는 가입자는 적정한 부담을 하며, 고소득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형평성 있게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편

□ 평가소득 폐지 및 재산·자동차 비중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

- (평가소득 폐지 및 최저보험료 도입) 성별, 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폐지,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13,100원)를 적용
- (재산 보험료 인하) 재산공제제도(재산 5천만 원 이하 세대는 500 ~ 1,200만 원 까지 공제 후 보험료 부과)를 도입하여 339만 세대 재산 보험료 40%인하
- (자동차 보험료 인하) 290만 세대 자동차 보험료 55%인하
 - 보험료 면제 : 9년 이상 노후자동차, 생계형 차량(승합, 화물, 특수차),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이면서 4천만 원 미만)
 - 보험료 30% 감면 :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이면서 4천만 원 미만)

□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

-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연소득 3,860만 원), 상위 3% 재산 보유자(재산과표 5억 9,700만 원)는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가 인상

□ 보수(월급)외 소득이 많은 상위 1%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조정

-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직장가입자 99%는 개편 전 수준 유지)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 향상

- (소득요건) 연 소득 3,400만 원(과세소득 합산 기준)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
-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또는 재산과표 9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
- (부양요건)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

※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인 형제자매는 예외적으로 소득·재산·부양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유지

②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총괄표

구 분		현 행	1단계('18.7월)	2단계('22.7월)
소 득 보 험 료	평가소득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평가소득 폐지, 종합과세소득 적용	
	최저보험료	3,660원 (부과점수 20점)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13,100원	336만원 이하 세대, 17,460원
	소득평가율	연금, 근로 20%	연금, 근로 30%	연금, 근로 50%
	소득등급표	75등급 (500만원~4억9,900만원)	97등급 (100만원 ~ 11억4,000만원)	정률 부과
지 역 가 입 자	재산보험료	공제금액 전월세 500만원	재산 4구간별 차등공제 • 1,200만원 이하 → 최대 1,200만원 • 1,201~2,700만원 → 850만원 • 2,701~5,000만원 → 500만원 • 5,000만원 초과 → 전월세만 재산 500만원	재산금액 5,000만원
	재산등급표	50등급 (100만원 ~ 30억원)	60등급 (1 ~ 77억8,124만원)	
	계산식	재산과표 + {(전월세 - 기본공제액) × 30%}	{재산과표 + (전월세 × 30%)} - 기본공제액	
자동차보험료	차량종류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승용차만 부과	
	사용연수	15년 미만	9년 미만	
	배기량, 가액	7등급 구분 (가액 기준 없음)	1,600cc 이하는 4천만원 이상만 부과 1,600cc 초과는 모두 부과	4천만원 이상 (배기량 기준 폐지)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	2,324,240원 (부과점수 12,680점)	'18.7월 기준 3,096,570원 (前前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	4,873,440원 (보수월액 7,810만원)	'18.7월 기준 6,193,140원 (前前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	
소득월액보험료	상한	2,436,720원 (소득월액 7,810만원)	'18.7월 기준 3,096,570원 (前前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부과대상	보수외소득 연 7,200만원 초과	연 보수외소득 3,400만원 초과	
	공제금액	-	3,400만원	
	계산식	(연 소득 ÷ 12월) × 보험료율의 절반	{(연 소득 - 3,400만원) ÷ 12월} × 보험료율	
피부양자	소득요건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각각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	3,400만원 이하 ('17년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000만원 이하 ('17년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재산요건	재산 9억원 이하	5억4천만원 이하 5.4억(3.6억)초과 ~ 9억원 이하는 연 소득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만 지역가입자로 전환	3억6천만원 이하
	형제자매	인정 (소득 각 4천만원, 재산 3억원 이하)	원칙적으로 제외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 재산, 부양요건 충족 시 인정)	재산 1.8억원 이하 재산 1.2억원 이하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